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정 2015.12.31.
개정 2016. 3.11.
개정 2016. 6. 2.
개정 2016. 7.21.
개정 2016. 9. 1.
개정 2016.10.24.
개정 2016.12.29.
개정 2017. 2. 7.
개정 2017. 3. 9.
개정 2017. 6. 7.
개정 2017.11.24.
개정 2017.12.12.
개정 2017.12.28.
개정 2018. 3. 8.
개정 2018. 6. 7.
개정 2018. 9. 6.
개정 2018.11.28.
개정 2018.12. 6.
개정 2019. 1. 4.
개정 2019. 3.21.
개정 2019. 6.14.
개정 2019. 7.17.
개정 2019. 8.29.
개정 2019.12.23.
개정 2020. 2. 6.
개정 2020. 8. 4.
개정 2020. 9. 3.
개정 2020.11.30.
개정 2021. 6. 3.
개정 2021. 7.15.
개정 2021.12. 2.
개정 2022. 2. 8.
개정 2022. 6. 2.
개정 2022. 9.13.
개정 2023. 3. 9.
개정 2023. 6.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신용정보주체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 2020.8.4.>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9.1., 2020.8.4.>
2. “일반신용정보”란 이 규약에 의하여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6.9.1.>
3. “신용정보주체”란 일반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로서 생존하는 개인,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및 법인’ (이하 “기업”이라 한다),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련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9.1., 2020.8.4., 2022.9.13.>
 -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대출자자인 자
 -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 다.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개정 2020.8.4.>
 - 라.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개정 2020.8.4.>
4. “금융기관”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정한 자를 말한다.
 - 4의2. “채권인수전문기관”이란 금융기관 중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6.12.29., 개정 2019.6.14., 2022.9.13.>
 - 4의3. “정책금융기관”이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

- 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 <신설 2019.6.14.>
5. “대부업자”란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9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6.6.2.>
6. “상호저축은행”이란 시행령 제5조제2항제9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6.6.2., 개정 2020.8.4.>
7. “신용카드업자”란 금융기관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6.9.1.>
8. “증권회사”란 금융기관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6.9.1.>
- 8의2.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중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신설 2016.12.29.>
- 8의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란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8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0.8.4.>
9. “주채무계열”이란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한 계열기업군을 말한다.
10. “기타계열”이란 주채무계열이 아닌 계열기업군(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계열기업군 중 한국신용정보원(이하 “신용정보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계열기업군을 말한다. <개정 2016.9.1.>
-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가 1천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
-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 <개정 2017.12.12.>
11. “신용공여”란 기업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접·간접적 거래로서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6조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2.9.13.>
12. “상환능력심사 지원정보”란 금융기관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로 제10조제1항제10호각목의 항목을 활용하여 산출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6.7.21., 개정 2017.12.28., 2022.9.13.>
- 12의2. “채권자 변동정보”란 금융기관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양도·양수 사실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0.8.4.>
13. “연체”란 원금(분할상환금을 포함한다)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9.1., 2017.6.7.>
 14. “보험상품”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호에 의한 계약,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3항각호에 의한 공제계약,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의2제4항각호에 의한 공제계약,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1조의2제4항각호에 의한 공제계약,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의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신설 2016.3.11., 개정 2016.9.1.>
 15. “회생절차”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 및 간이회생절차를 말한다. <신설 2016.9.1.>
 16. “회생계획인가결정”이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말한다. <신설 2016.9.1.>
 17. “개인회생절차”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를 말한다. <신설 2016.9.1.>
 18. “변제계획인가결정”이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말한다. <신설 2016.9.1.>
 19. “개인회생면책결정”이란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의 규정에 의한 면책의 결정을 말한다. <신설 2016.9.1., 개정 2022.9.13.>
 20. “파산면책결정”이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의 규정에 의한 면책허가결정을 말한다. <신설 2016.9.1.>
 21. “보전처분등”이란 채무자회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 같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같은 법 제32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같은 법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같은 법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변제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신설 2016.9.1.>
 22. “영업일”이란 통상 은행이 점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6.9.1.>
 23. 삭제 <2022.9.13.>
 24. 삭제 <2022.9.13.>
 25. “대출 약정의 이행 현황 정보”란 금융기관이 각 업권별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와 체결한 약정(위반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약은 금융기관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금융기관이 자산보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9.1., 2016.12.29.>

제 2 장 집중관리 · 활용정보

제4조 【식별정보】 식별정보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하며, 해당 식별정보의 세부사항은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9.13.>

1. 개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업종

제5조 【신용거래정보】 신용거래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9.13.>

1. 개설 · 발급정보 및 기타 금융거래 정보 <개정 2022.9.13.>
2. 개인대출정보
3. 카드대출정보 <개정 2016.7.21.>
4. 보험계약대출정보 <신설 2019.7.17.>
5. 개인채무보증정보
6. 기업신용공여정보
7. 신용카드 이용 · 결제금액에 관한 정보(복수카드 정보 포함) <신설 2016.9.1., 개정 2021.12.2.>
8. 사고회원정보 <신설 2016.9.1.>

제6조 【신용도판단정보】 ① 신용도판단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9.13.>

1. 연체정보
2. 대위변제 · 대지급정보
3. 부도정보
4. 금융질서문란정보

5. 관련인정보

6. 미수(위탁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매매거래함에 있어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제1항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결제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발생정보 <신설 2016.9.1., 개정 2019.7.17.>

7. 신용거래의 무담보 미수채권(증권회사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위탁자의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 대주를 임의로 상환·정리한 이후에도 잔존하는 미회수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정보 <신설 2016.9.1.>

② 연체정보등이란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및 관련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9.1., 2022.9.13.>

제7조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란 개인의 재산·채무·소득 등과 기업의 개황, 사업의 내용, 채무에 관한 사항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9.13.>

제8조 【공공정보】 공공정보란 공공기관(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일반신용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9.13.>

1.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 체납자에 대한 정보
2.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정보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정보
4. 「관세법」에 의한 관세체납자에 대한 정보
5.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자에 대한 정보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산재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정보
7.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자에 대한 정보
8.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자에 대한 정보
9.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
10.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정보(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개정 2022.9.13.>
1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규정에 의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정보

12. 중소기업부의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및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도전지원 특례보증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 <개정 2017.6.7., 2017.12.12., 2019.6.14.>
13.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에 대한 정보
14. 조달청의 정부 납품실적 및 납품액 정보
1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에 의해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정보 <개정 2017.2.7., 2017.12.12.>
16. 국세청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정보
17.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등 체불자료에 대한 정보
18.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 및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거나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자에 대한 정보 <개정 2018.9.6.>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인증·인가·인정·지정·등록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 <신설 2020.8.4.>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신설 2022.9.13.>
20.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보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한 정보 <신설 2021.12.2.>
2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정보 <신설 2022.6.2.>
22.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정보 <신설 2022.6.2.>
23.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따라 새출발기금이 협약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정보 <신설 2022.9.13.>

제 3 장 일반신용정보의 관리

제 1 절 일반원칙

제9조 【관리기관】 ① 금융기관은 일반신용정보의 등록·해제·정정·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전산망을 통하여 신용정보원에 해당 일반신용정보를 등록·해제·정정·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통하여 일반신용정보를 등록·해제·정정·삭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용정보원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신용카드 이용·결제금액에 관한 정보(복수카드 정보 포함), 사고회원정보, 미수발생정보, 신용거래의 무담보 미수채권정보를 제외한 일반신용정보는 <별지 제2호 서식>「일반신용정보 사유발생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일반신용정보정정요청서」로, 기업신용공여정보는 <별지 제4호 서식>「기업신용공여정보 사유발생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기업어음거래상황표」로 등록·해제·정정·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6.9.1., 2021.12.2., 2022.9.13.>

②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유동화자산(금융기관이 자산보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자산에 대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명의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9.1., 개정 2016.12.29.>

제10조 【일반신용정보의 등록】 ① 금융기관은 일반신용정보(신용카드 이용·결제금액에 관한 정보, 사고회원정보, 미수발생정보, 신용거래의 무담보미수채권정보는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한다. <개정 2016.9.1., 2022.9.13.>

1. 별표1에 따른 식별정보
2. 등록사유
3. 사유발생일자
4. 사유해제일자
5. 해제사유
6. 금액(등록·연체금액)
7. 등록일자
8. 약정일자
9. 계좌를 식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부여한 번호(이하 “계좌번호”라 한다)
- 9의2. 법원이 부여한 사건번호 및 그 사건번호를 부여한 법원의 정보(단, 별표1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 <신설 2017.2.7.>
10. 상환능력심사 지원정보 산출에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개인대출정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보험계약대출정보에 한한다) <신설 2016.7.21., 개정 2017.12.12., 2017.12.28., 2018.9.6., 2018.12.6., 2019.7.17., 2019.12.23.,

2022.9.13.>

가. 대출신청·접수·만기 등의 일자 <개정 2022.9.13.>

나. 삭제 <2018.12.6.>

다. 대출금리

라. 상환방식

마. 대출만기약정·만기연장·거치 등의 기간(또는 종료일) <개정 2022.9.13.>

바. 만기지정액

사. 삭제 <2022.9.13.>

아. 연간 원리금 상환 예정액(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7.12.28., 개정 2018.12.6.>

자. 삭제 <2022.9.13.>

차. 삭제 <2022.9.13.>

11. 삭제 <2020.8.4.>

12. 대출 약정의 이행 현황 정보 관련 등록 항목(주택관련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한한다.) <신설 2020.8.4.>

가. 추가약정종류

나. 약정이행 상태 및 확인일자

다. 약정위반 여부 및 위반일자

라. 주택수

마. 담보종류

13. 금융기관이 상환능력심사 지원정보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고가주택 담보대출, 고액 신용대출 등의 대출 차주를 구분하기 위한 정보 <신설 2020.11.30., 개정 2022.9.13.>

② 금융기관은 개인대출정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보험계약대출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0호의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코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6.9.1., 개정 2017.12.12., 2018.9.6., 2018.12.6., 2019.7.17.>

1. 만기일자가 경과된 경우 : 11

2.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 12

3.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경우(상각을 포함한다) : 13

4.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14

5.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 : 15

- 6. 채권을 양수한 경우 : 16
- 7. 상환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 17
- 8. 차주가 사망하거나 기타 사유로 제1항제10호의 정보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 : 18
- ③ 금융기관은 미수발생정보 및 신용거래의 무담보 미수채권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신설 2016.9.1., 개정 2022.9.13.>
 - 1. 미수발생정보의 경우
 - 가. 증권회사명
 - 나. 위탁자명
 - 다. 식별정보
 - 라. 등록사유(미수발생 구분)
 - 마. 미수발생일
 - 2. 무담보미수채권의 경우
 - 가. 증권회사명
 - 나. 위탁자명
 - 다. 식별정보
 - 라. 미수발생(변동)일
 - 마. 미수채권최종액(미수채권 잔액이 변동하는 경우 정정한다)
- ④ 금융기관은 일반신용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6.9.1.>
- ⑤ 금융기관은 개인대출정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보험계약대출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및 연체정보등은 발생내역별로 등록하고 그 외의 일반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별로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7.21., 2016.9.1., 2019.7.17., 2022.9.13.>
- ⑥ 금융기관은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9.1.>

제 2 절 식별정보

- 제11조 【식별정보의 등록】** ① 식별정보는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공공정보와 함께 신용정보주체별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신설 2022.9.13.>
- ②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의 식별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변경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 ③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는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편입, 제외 등의 내용은 신용정

보원이 직접 등록하며, 금융거래 관계가 있는 기타계열에 대한 계열기업군 형성 및 변동 상황은 매 반기 말까지 금융기관이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제 3 절 신용거래정보

제12조【신용거래정보의 등록】 ① 개인대출정보, 카드대출정보, 보험계약대출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하며, 신용거래정보의 등록사유·등록코드, 해제코드, 등록시기 등 세부사항은 <별표 1>「신용정보관리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9.13.>

1. 해당 신용거래정보의 등록사유발생일은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주체간 해당 거래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다만, 등록사유발생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한다.
2. 해당 신용거래정보의 등록금액은 잔여 대출원금으로 한다.
3. 해외대출금, 해외지급보증의 등록대상은 해외영업점과 주민등록번호로 약정한 개인,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이하 “개인사업자”라 한다), 국내법인(해외지사를 포함한다) 등으로 한다.
4. 기업신용공여정보 등록 시 국내에 모기업을 둔 해외현지법인의 신용공여를 포함하여 등록한다.

② 금융기관이 개인대출채권 및 신용공여를 특수채권으로 편입함에 따라 기 등록된 정보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대출 종류, 등록금액, 계좌(거래)번호 등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정보를 해제하고 특수채권으로 등록(부분상각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기존 정보의 계좌(거래)번호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③ 제10조제1항제10호의 정보를 등록한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원이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한 상환능력심사 지원정보 및 제10조제1항제13호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2.9.13.>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10호의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신용정보원은 관련 상환능력심사 지원정보를 산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2.9.13.>

1. 삭제
2. 만기경과, 기한의이익상실, 특수채권, 매입채권, 회생채권, 신용회복채권. 다만, 이 경우 제10조제1항제10호의 등록항목을 등록하지 않고 별도의 구분 값을 등록하여야 한다.

3. 제10조제1항제10호의 상환능력심사 지원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대출현황 정보가 없는 경우

⑤ 삭제 <2021.12.2.>

⑥ 신용카드업자는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개인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받은 자(이하 “복수카드소지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당월 12영업일 이내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2016.9.1., 개정 2021.12.2.>

1. 개인신용카드 2개를 서로 다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자에게 개인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의 상호

2. 신용판매 신용공여한도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용공여한도(복수카드소지자 별로 합계한 금액은 제외한다)

제13조 【신용회복시 신용거래정보 관리기준】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원은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 또는 개인회생면책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거래정보를 해제한다. <개정 2019.7.17., 2022.6.2., 2022.9.13.>

1. 파산면책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제5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정보를 해제

2. 개인회생면책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 개인회생면책결정을 받은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제5조제2호 중 신용대출(대출(담보)종류코드 100) 및 제3호의 정보를 해제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제된 정보 중 파산면책결정 또는 개인회생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련된 정보를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

③ 금융기관은 신용거래정보가 파산면책결정 또는 개인회생면책결정을 사유로 해제된 후 파산면책결정 또는 개인회생면책결정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 파산면책결정 또는 개인회생면책결정을 사유로 해제된 신용거래정보를 다시 등록한다. 이 경우 등록금액 및 등록사유 발생일은 파산면책결정 또는 개인회생면책결정을 사유로 해제된 그 정보의 등록금액 및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16.9.1., 개정 2022.6.2.>

제 4 절 신용도판단정보

제14조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연체정보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하며,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등록시기 등 세부사항은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9.13.>

1. 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정보의 등록사유발생일은 연체기산일로부터 별표 1의 등록사유에서 정하는 기간이 되는 날을 말한다. 다만, 등록사유발생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한다.
2. 제1호의 연체기산일은 원금(분할상환금을 포함한다)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날로 하며,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상환에 의해 차기납입일이 변경된 경우 차기납입일의 다음 날로 한다.
3. 연체정보의 등록금액은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의 잔여 대출원금으로 하며, 연체금액은 실제 연체가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등록금액은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하였으나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결제되지 않은 원금(할부로 청구된 경우 미결제원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최초 연체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특수채권으로 편입할 경우에는 각 등록코드 앞에 “7” 을 추가한다. 다만,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신용도판단정보의 관련인의 경우 각 등록코드 앞에 “8” 을 추가한다.
5. 해외대출금연체,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 등록대상은 해외영업점과 주민등록번호로 약정한 개인, 개인사업자, 국내법인(해외지사를 포함한다) 등으로 하며, 국내에 모기업을 둔 해외현지법인의 신용공여 연체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9.13.>
6. 채무부존재소송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 확정판결일을 등록사유발생일로 본다.

제15조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특례】 ①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정보등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1. 본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자금대출로서 동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채무인계절차 미필로 등록대상이 된 때도인
 2. 건설업자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의 분양계약자에게 실행된 대출금으로서 건설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등록대상이 된 자
 3. 본인의 예·적금, 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불입액 범위내의 대출을 연체한 자
- ② 금융기관은 관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인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투자행위 등으로 인하여 투자대상업체의 관련인이 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2.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관에 대한 출자법인 등
3. 자본금의 30%이상을 출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4.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 면제 및 지원(직접 자금지원 또는 대출에 대한 보증 등)을 받은 관련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설 2019.6.14.>

가. 정책금융기관이 해당 지원 건에 대해 등록하는 관련인 정보의 경우, 피관련인의 연체기산일로부터 7개월 이내(보증기관은 대지급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기관이 관련인의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준수를 결정한 경우

나. 보증부대출 취급기관이 해당 지원 건에 대해 등록하는 관련인 정보의 경우, 피관련인의 연체기산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관련인이 동 기관에게 정책금융기관과 체결한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③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음 및 수표의 최종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신용도판단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7.12.12.>

1.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2. 채권 관련 정보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④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정보등을 등록할 수 없다.

1. 종전 업권별 규약상 「기업구조조정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
2.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대상기업
3. 「신용위험평가협의회 협약」 대상기업
4.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해당기업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
6.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운영협약」에 의한 기업
7.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적용을 받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기업

⑤ 금융기관은 연체정보등의 등록사유 발생 전에 보전처분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 <신설 2017.6.7.>

제16조 【신용회복시 신용도판단정보 관리기준】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연체정보등을 해제한다.

1.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파산면책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2.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확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3.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조정확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제된 정보 중 변제계획인가결정, 파산면책결정, 신용회복지원 확정 또는 채무조정확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련된 정보를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 ③ 금융기관은 연체정보등이 해제된 후 해당 해제사유가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해제사유로 해제된 연체정보등을 다시 등록한다. 이 경우 연체금액, 등록 금액 및 등록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이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파산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로 연체정보등이 해제된 후 신용회복지원 확정, 새출발기금과의 채무조정 약정,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파산면책결정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 : 연체금액은 법령 등에 따라 변제충당후 남은 나머지 원금을, 등록금액 및 등록사유 발생일은 해제된 그 정보의 등록금액 및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개정 2022.9.13.>
 2.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이 있는 경우”, “채무의 상환을 유예한 경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연체정보등이 해제된 후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채무의 상환을 유예한 결정 등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 : 연체금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 또는 민법 등에 따라 변제충당 후 남은 원금을, 등록금액 및 등록사유 발생일은 해제 전의 채권이 유효한 경우 그 채권의 등록금액 및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 해제 전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새로 발생한 채권의 등록금액 및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 ④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어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채무자가 연체한 경우 등록 금액, 연체금액, 등록사유 발생일 등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6.9.1.>

제17조【어음 및 수표의 회수인정】 ① 부도처리된 어음 및 수표를 분실·멸실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또는 수표 용지를 회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1.>

1. 수사기관의 증거물 압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2. 변제공탁을 한 경우
3. 공시최고와 함께 어음 및 수표금액을 별단예금에 입금한 경우
4. 어음 및 수표에 대하여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5. 어음 및 수표의 결제 당시 소지인(이하 “최종소지인” 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거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등) 사본을 첨부한 결제확인서 등을 받은 경우

6.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고 어음 및 수표의 최종소지인의 사망, 행방불명, 주민등록 말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부도 처리된 신용정보주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가. 신문공고와 함께 어음 및 수표 금액을 별단예금에 입금한 경우

나.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날까지 어음 및 수표의 소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관계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7.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고 부도처리한 어음·수표를 회수할 수 없거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에 의한 신문공고 신청이 있어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 하여금 전국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토록 하되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어음 및 수표의 종류, 번호, 발행일, 발행인, 지급장소, 발행금액

2. 공고인의 성명

3. 공고의 취지

4. 어음 및 수표의 소지인이 권리관계를 신고할 장소 및 신고 기간

③ 별단예금 입금액은 제1항제3호의 경우 제권판결문을 제출할 때까지, 제1항제6호가목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에 대한 신고기간이 끝날 때까지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절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제18조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의 등록】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의 등록사유, 등록코드, 등록시기 등 세부사항은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9.13.>

제 6 절 공공정보

제19조 【공공정보의 등록】 ① 공공정보의 등록사유·등록코드, 해제사유·해제코드 등 세부사항은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9.13.>

② 제8조제10호, 제11호 및 제23호에 따른 정보는 연체정보등이 등록된 신용정보주체에 한하여 등록한다. <개정 2022.9.13.>

제20조 【개인회생절차 진행정보의 관리기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원은 개인회생결정의 변제계획인가결정정보(등록코드 1301)가 등록되는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이미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 인한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및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정보(등록코드 1311)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등록코드 1311)를 해제한다. <개정 2022.9.13.>

제 7 절 기타사항

제21조 【일반신용정보의 공유예외】 ①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1.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정보(다만 공단신용보증대지급금은 제외한다)중 등록금액 100만원 이하의 정보(이하 “소액연체정보” 라 한다)
2. 제8조제12호의 정보
3. 제8조제12호가 등록될 당시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정보, 제23호의 정보 및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보존 중에 있는 연체정보등 <개정 2022.9.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소액연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6.6.2., 2016.9.1., 2016.12.29., 2018.12.6.>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유동화전문회사의 금융기관이 아닌 자산관리자 및 채권인수전문기관이 등록한 신용도판단정보는 제외)가 2건 이상인 경우
2. 제1호에 의하여 제공된 소액연체정보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

③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원으로부터 해당 금융기관이 등록한 일반신용정보와 다른 금융기관이 등록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한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및 개인회생개시결정 정보(등록코드 1311)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6.6.2., 2016.9.1., 2017.12.12., 2018.12.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금융기관이 아닌 자산관리자가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일반신용정보는 해당 정보를 등록한 기관 외에는 제공받을 수 없다. 또한 금융기관이 아닌 자산관리자가 자산을 관리하는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기관이 집중한 일반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2. 채권인수전문기관이 등록한 다음 각목의 신용정보는 해당 정보를 등록한 기관 외에는 제공받을 수 없다. 또한 채권인수전문기관은 금융기관이 집중한 일반신용정보 중에서 다음 각목에 따라 자신이 집중한 정보와 동일한 종류의 정보는 제공받을 수 없다.

가. 정리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등록한 신용거래 정보

나.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 등록한 일반신용정보 중 공공정보를 제외한 정보

다. 삭제 <2022.9.13.>

제22조 【일반신용정보의 보존기간】 ① 신용거래정보,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및 공공정보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존·공유하지 않는다. 다만, 신용카드 이용·결제금액에 관한 정보(복수카드 정보 포함), 해제사유코드 “0088” 로 해제된 개인대출정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정보(이하 “대출계약철회정보” 라 한다), 대출 약정의 이행 현황 정보 및 제10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고액 신용대출 차주를 구분하기 위한 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존·공유한다.

1. 신용카드 이용·결제금액에 관한 정보(복수카드 정보 포함) :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2. 대출계약철회정보 :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7영업일(다만, 대부업자가 등록한 대출계약철회정보는 보존·공유하지 않는다)

3. 대출 약정의 이행 현황 정보 : 약정위반일로부터 3년

4. 고액 신용대출 차주를 구분하기 위한 정보 : 해당 차주의 총 신용대출이 1억원 이하가 될 때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거래정보는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간 보존·공유한다. 다만,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2개월간 보존한다. <개정 2022.9.13.>

③ 신용도판단정보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에 따라 보존·공유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용도판단정보가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한 경우(해제코드:17)” 로 해제된 경우 삭제한다. <개정 2016.9.1.>

제23조 【일반신용정보의 정확성 제고】 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의 정확성 여부 등을 점검 또는 대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일반신용정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2016.9.1.>

제24조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금융기관은 일반신용정보를 등록·해제·정정·삭제한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해당 조치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제 4 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25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금융기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일반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원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이하 “조회동의”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금융기관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조회동의를 받은 사실을 신용정보원에 전자적 기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원은 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적 기록의 진위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신용정보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9.13.>

⑦ 신용정보원이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1.]

제26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한】 ① 금융기관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복수카드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신용카드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9.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에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받거나 해당 결정 없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정보(등록코드 1311)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와의 신규 거래 개설 또는 거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④ 삭제 <2020.8.4.>

제27조 【일반신용정보의 누설 금지】 일반신용정보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신용정보주체의 일반신용정보등을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9.1.>

제28조 【일반신용정보의 정정·삭제】 ① 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해제·정정·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8.4.>

② 금융기관은 일반신용정보가 등록된 이후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정청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된 일반신용정보를 “등록취소(코드 0077)” 를 입력하여 삭제하거나,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이행의소, 확인의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금융기관이 제기한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연체정보등 등록 전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체정보등의 등록을 유예하여야 한다.
2. 연체정보등 등록 후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송의 진행 사실 또는 부존재의 주장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 연체정보등을 “등록취소(코드 0077)” 를 입력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3. 연체정보등 외의 일반신용정보는 제2항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제29조 【채권자변동정보 등록기관】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 발생한 채권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이 규약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8.4.>

제30조 【채권자변동정보 등록정보】 ① 금융기관은 “채권의 취득·양도·양수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8.4.>

1. 채권양도 기준시점, 회차, 일자, 금액 및 사유
2. 최초채권의 기관명, 법인번호, 관리(계좌)번호, 발생일자, 대출원금금액
3. 양도기관의 기관명, 법인번호, 관리(계좌)번호
4. 양수기관의 기관명, 법인번호, 관리(계좌)번호

②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일)
2.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및 상실날짜
3. 채무 관련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집행 여부 및 집행 날짜
4.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 여부 및 수탁업체의 이름
5. 신용정보주체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연락처

제31조 【채권자변동정보 이용 제한】 채권자변동정보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의 채권자 변동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평가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목적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8.4.>

제 6 장 보안관리

제32조 【신용정보 인터넷망 이용】 ①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1. 해당 기관은 “신용정보 인터넷망”의 사용자를 지정하고, 신용정보원에 “인터넷망 사용자 등록신청서”를 통하여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2. 해당 기관은 인사이동, 기타의 사유에 따른 사용자 변경시 신용정보원에 그 변경내용

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용자의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책임은 해당 사용자 소속 기관에 있으며, 해당 기관은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해당 기관은 사용자의 접근권한이 도용되거나 제3자가 이를 이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해당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신용정보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16.9.1.>

제33조 【일반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 전산시스템(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파괴 기타 위험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제 7 장 보 칙

제34조 【일반신용정보운영분담금】 금융기관은 일반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신용정보운영분담금을 부담한다. <개정 2016.9.1.>

제35조 【규약위반에 대한 제재】 ① 금융기관은 신용정보 교환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신용정보 제공누락, 지연, 거짓 등록 등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법 제26조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에 따라 제재금을 부담한다. <개정 2016.9.1.>

② 금융기관이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의 일반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9.1.>

부 칙 <2015.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16. 1. 1. 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3>의 규정은 2016. 1. 4.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종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의 규정,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약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신용정보의 교환·활용과 관련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설치된 신용정보협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약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별도규정】 ① <별표3> 제5조에 따른 복수카드정보 및 제9조에 따른 사고회원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3>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약의 <별표3>외의 부분(부칙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별표4> 제4조에 따른 미수정보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4>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약의 <별표4>외의 부분(부칙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유제한】 ① 대부업 신용정보의 공유전까지 대부업자는 타 업권의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② <별표3> 제5조에 따른 복수카드정보 및 제9조에 따른 사고회원정보는 <별표3>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외에는 공유할 수 없다.

③ <별표4> 제4조에 따른 미수정보등은 <별표4> 제1조에 따른 증권회사 외에는 공유할 수 없다.

부 칙 <2016.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16. 3. 21.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의 2.신용거래정보의 2)개인대출정보의 개정규정은 2016. 5. 2. 부터, 제2조제9호 및 같은 표 같은 기준의 3.신용도판단정보의 4)금융질서문란정보의 개정규정은 2016. 6. 3.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신용정보관리기준」의 3.신용도판단정보의 4)금융질서문란정보란의 0901부터 0907까지, 0911, 0912, 0922, 0923, 0931부터 0940까지, 0950 및 0951코드의 정보는 2016. 3. 11.에 해제 후 5년간 기록을 보존한다.

② 「신용정보관리기준」의 3.신용도판단정보의 4)금융질서문란정보란의 0960부터 0963까지 및 0965부터 0969까지 코드의 정보는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등록사유 발생일이 2016. 3. 12. 이후인 경우 등록한다.

③ 「신용정보관리기준」의 3.신용도판단정보의 4)금융질서문란정보란의 0964 코드의 정보

는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등록사유 발생일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일 이후인 경우 등록한다.

부 칙 <2016.6.2.>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6. 8. 16.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대부업자 및 상호저축은행은 제1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 12. 18. 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해당 각 호에 따른 소액연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신용도판단정보(대부업자가 집중한 신용도판단정보에 한한다)가 2건 이상인 경우 소액연체정보(대부업자가 집중한 소액연체정보에 한한다)
2. 신용도판단정보(대부업자가 집중한 신용도판단정보는 제외한다)가 2건 이상인 경우 소액연체정보(상호저축은행이 집중한 소액연체정보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제공된 소액연체정보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 그 소액연체정보

② 이 규약 시행 당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신용정보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제1호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2016. 12. 19. 부터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신용정보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부칙의 폐지】 이 규약의 시행과 동시에 이 규약의 부칙 <2016.1.1. 시행> 제4조제1항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6.7.21.>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2016. 7. 29.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2. 신용거래정보의 2)개인대출정보의 해지사유코드 신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6. 10. 4. 부터, 제15조제2항 및 별표 1의 2. 신용거래정보의 3)신용카드대출 중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해지사유코드 신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6. 11. 21. 부터, 제2조제12호,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1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 1. 1. 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는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별도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6.9.1.>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6.11.1.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3. 신용도판단정보 의 1)연체정보의 등록코드 0115, 0116, 0117에 해당하는 정보의 개정규정, 2) 대위변제·대지 급 정보의 등록코드 0208에 해당하는 정보의 개정규정, 5. 공공정보 1)체납정보 등의 등 록코드 91003에 해당하는 정보의 개정규정은 2016.9.1.부터, 같은 표의 5. 공공정보의 1)체 납정보 등의 등록코드 0604, 0605, 0606에 해당하는 정보의 개정규정은 2017.1.1.부터 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신용정보원은 5. 공공정보 1)체납정보 등의 등록코드 91003에 해당하 는 정보를 2016.9.1. 삭제한다.

② 제1조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원으로부터 2016.12.31. 까지 대상기업체 명 단을 통보받을 수 있다.

부 칙 <2016.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6. 10. 28.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2. 신용거래정보중 3)신용카드대출란의 개정규정은 2016. 11.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약 부칙(2016. 7. 29. 시행)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 고 대부업자에 대해서 이 규약 별표 1의 2. 신용거래정보의 2)개인대출정보중 해제사유코 드 신설에 관한 개정규정(2016. 7. 29. 개정)을 2016. 10. 28.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 공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17. 2. 28. 까지 다른 금융기관이 등록한 대출계약철회정보 를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부 칙 <2016.12.29.>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2017. 4.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의2, 제15조제2 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 1. 2.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업체는 제5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17. 4. 1. 부터 발생한 모든 개인대출채권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정보를 집중한다.

③ 제1항의 시행일 전에 발생·양도된 채권에 대한 정보는 2017. 4. 1. 현재 그 채권에 대한 일반신용정보(대부업체가 보유한 채권의 정보는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금융기관이 최초, 과거 및 현재 채권자 정보에 대해 다음 각호의 항목을 집중한다.

1. 양도회차
2. 양도기관명
3. 등록사유발생일
4. 등록금액
5. 채권기관 법인번호
6. 채권양도일
7. 채권양도금액
8. 채권양도사유
9. 소멸시효완성여부
10. 소멸시효완성일(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11. 등록기관 전화번호

부 칙 <2017.2.7.>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2017. 2. 13.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2017. 4. 1. 부터, 별표 1의 3. 신용도판단정보의 1)연체정보의 등록코드 0118에 해당하는 정보의 개정규정, 2)대위변제·대지급정보의 등록코드 0206, 0207, 0209에 해당하는 정보의 개정규정은 2017. 4. 17. 부터, 5. 공공정보의 1)체납정보의 등록코드 1311에 해당하는 정보의 개정규정은 2017. 4. 1. 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1의 5. 공공정보의 1-2)신용회복지원등의 등록코드 1311에 해당하는 정보는 시행 일 전에 등록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시행일 현재까지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괄 등록한다.

제2조【부칙의 폐지】 이 규약의 시행과 동시에 이 규약의 부칙 <2016.12.29. 시행> 제1조제 3항제1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7.3.9.>

이 규약은 2017. 4.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의 2. 신용거래정보 5) 기업신용공여정보 중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4호 서식 신용공여조사표 중의 개정규정은 2017. 6. 1. 부터 시행하되, 해당 월의 마지막 영업일 기준 일일여신 및 월말여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6.7.>

이 규약은 2017. 7. 3.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2. 신용거래정보 2) 개인대출정보, 3) 카드대출정보, <별지 제2호 서식> 일반신용정보 사유발생보고서의 개정규정 : 2017. 9. 4.
2. <별지 제4호 서식> 신용공여조사표 (조사표3)의 개정규정 : 2017. 9. 29.
3. 제16항제2항제1호,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2. 5) 기업신용공여정보 및 <별지 제4호 서식> 신용공여조사표 (조사표1) 부터 (조사표3)의 개정규정 : 2017. 12. 29.

부 칙 <2017.11.24.>

이 규약은 2017. 11.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7. 12. 12.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2. 신용거래정보 6) 복수카드정보의 개정규정은 2018. 1.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신용정보원은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2. 신용거래정보 6) 복수카드정보 중 연체금액에 해당하는 정보를 2018. 1. 31. 삭제한다.

부 칙 <2017.12.28.>

이 규약은 2018. 1.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3.8.>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8. 3. 8.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특례】 제15조제7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 9. 7.까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이행을 위하여 재기지원 신청자의 개인대출정보 및 카드대출정보(대부업자 등록 정보 및 상환능력심사 지원정보는 제외)를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부 칙 <2018.6.7.>

이 규약은 2018. 6. 7.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 12. 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9.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8. 10.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과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1) 연체정보 및 5. 공공정보 1) 체납정보 등의 개정규정은 2018. 9. 6.부터,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 10.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신용정보원은 2018. 10. 15. 기준으로 등록코드 1101이 등록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관련인정보 및 부도정보를 해제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제된 정보 중 신용회복지원확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련된 정보를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 <2018.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8. 11. 28.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의 폐지】 ① 이 규약의 시행과 동시에 이 규약의 부칙 <2018.6.7. 시행> 단서는 이를 폐지한다.

② 2018.6.7. 개정 규약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추후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9. 3. 25.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0호의 나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2018. 12.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약 시행 당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신용정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개정전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 소액연체정보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도판단정보가 추가로 등록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이 제공받을 수 없다.

부 칙 <2019.1.4.>

이 규약은 2019. 1.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3.21.>

제1조【시행일】 2018.12.6.개정된 제15조 제2항 및 제5항은 2019. 5. 2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2018.12.6. 개정 규약의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12.6. 개정 전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대부업자를 제외한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 상호저축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받은 소액연체정보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시행일 이후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모든 소액연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소액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나 개정 전 제15조제2항 각 호의 제공대상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신용정보주체의 소액연체정보는 2018.12.6.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도판단 정보가 추가로 등록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이 제공받을 수 없다.

부 칙<2019.6.14.>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9.6.28.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의2호 및 제15조제4항제2호의 가목의 개정규정은 2019.8.1부터 시행하며,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2. 신용거래정보 5-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의 개정규정은 2019.9.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전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중 5)관련인정보’가 등록된 자가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등록기관이 그 정보를 삭제한다.

- ① 정책금융기관이 등록한 관련인 정보는 동 기관에서 그 정보가 등록된 자의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준수를 결정하는 경우
- ② 보증부 대출 취급기관이 등록한 관련인 정보는 그 정보가 등록된 자가 동 기관에게 정책금융기관과 체결한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부 칙<2019.7.17.>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9.7.3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8.5.부터 시행하며, 2019.7.10. 이후 신규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취급된 보험계약대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한다.

부 칙 <2019.8.29.>

이 규약은 2019. 9.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3.>

이 규약은 2019. 12.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2.6.>

이 규약은 2020. 2. 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4.>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0. 8. 5.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5호, 제14조제12호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0. 9.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9.3.>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0. 9. 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0. 11.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6.3.>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21.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7.15.>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21. 7.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9.2.>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21. 10. 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22. 1. 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2022. 3. 28.부터 시행하며 제5조, 제13조 및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2022. 5.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22. 3.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6.2.>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22. 8.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9.13.>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22. 9.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전 종전 규약의 기업신용공여정보 집중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은 2022.12.31.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23.3.9.>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23. 4. 3.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민금융종류코드(500) 신설은 2023. 3.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6.1.>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23. 6.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환대출(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91) 코드 신설은 2023. 6. 30.부터, 부칙 제2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①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 등으로 확인된 경우 전세 관련 대출(대출(담보)종류코드 170 및 270)의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록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동 정보가 이미 등록된 이후 위 사유가 확인된 경우 동 정보를 “등록취소(코드 0077)”를 입력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1. 연체정보 : 등록 유예 신청일로부터 2년
2. 대위변제·대지급정보 :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② 금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연체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등록 유예(또는 삭제)한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정보를 등록한다. 이 경우 연체 금액은 등록 시점의 나머지 원금을, 등록금액 및 등록사유 발생일은 등록 유예(또는 삭제)된 그 정보의 등록금액 및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별표 1>

신 용 정 보 관 리 기 준

1. 식별정보 <개정 2017.6.7.>

구 분		등록 정보
식별 정보	개 인	-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우선하되, 동 번호가 없는 경우 <별표 2>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여권번호 조합)를 사용함
		- 성 명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 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업 종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업 종

2. 신용거래정보

1) 개설·발급정보 및 기타 금융거래 정보 <개정 2021.12.2., 2022.9.13.>

구 분	등록 대상자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해제 코드	등록시기	비고
개설·발급 정 보	개인	가계당좌예금 개설사실	0011	가계당좌예금 해지 사실	0012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신용카드 발급 사실	0081	신용카드 해지 사실	0082		
		신용체크카드 발급 사실	0083	신용체크카드 해지 사실	0084		
		햇살론카드 발급 사실	0085	햇살론카드 해지 사실	0086		
	개인사업자 및 법인	가계당좌 개설 사실	0011	가계당좌 해지 사실	0012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당좌예금 개설 사실	0021	당좌예금 해지 사실	0022		
		신용카드 발급 사실	0081	신용카드 해지 사실	0082		
기타 금융거래 정 보	개인	요구불예금, 적립식예금, 거치식 예금 거래 사실	0013	요구불예금, 적립식예금, 거치식 예금 거래 해지 사실	0014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햇살론카드 발급·해지사실 정보는 취급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 및 서민금융진흥원에만 제공 - 기타 금융거래 정보는 해당 정보 등록 금융기관에만 제공							

2) 개인대출정보 <개정 2016.10.24, 2016.12.29., 2017.6.7., 2017.11.24., 2018.9.6., 2019.8.29., 2020.2.6., 2020.8.4., 2021.6.3., 2021.7.15., 2021.9.2., 2022.9.13., 2023.3.9., 2023.6.1.>

구분	등록대상자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코드	대출(담보)종류		서민금융종류	대출(담보)세부종류(코드)	최초채권기관 및 대환대출(코드)	등록시기	해제사유	비고	
					종류	코드							
대출현황	개인	대출거래사실	0031	0032	신용대출	신용대출	100	- 사회망 홀씨 (100)	자동차 (01), 해당없음 (00)				- 은행-저축은행간 연계대출 구분(저축은행 및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이하 '신용정보회사')만 · 9 : 연계대출
						학자금대출	150						
						전세자금대출	170	-햇살론15 (150)					
						예·적금담보대출	200						
						유가증권(주식, 채권, 펀드 등)담보대출	210						
						주택담보대출	220	- 햇살론17 (170)					
						주택외 부동산(토지, 상가등)담보대출	230	- 햇살론 ^{out} (180) - 햇살론 뱅크 (190)	토지(31), 농지(32) 각종 시설 등(33), 오피스텔 (34)				
						담보대출	240	- 햇살론 (200)	자동차 (01), 해당없음 (00)				
						보증(보증서)담보대출	245						
						보증(보증서)담보대출	250	-바뀌 드림론 (300)					
					주택연금대출	260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대출	270	-안전망 대출 (350)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271							
					기타 담보대출	290	-안전망 대출II (360)	자동차 (01), 해당없음 (00)					
					할부금융	500							
					중고차 할부금융	510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400)						
					기타 할부금융	590							
					리스	700							
					운용리스	710	-간접생계비 소액대출 (500)	자동차 (01), 해당없음 (00)					
					기타	999	- 기타 (900)						
												- 대환대출(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인프라)(91)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유형·업무특성 등에 따라 분류된 집단이 작성한 이와 유사한 약관 또는 약정에 따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 경우 포함)하여 해제 시 해제사유코드 “0088” 입력
- 금융기관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기관이 등록한 대출계약철회정보를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7영업일 동안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 양수받은 채권의 경우 당초의 등록코드 및 대출(담보)종류코드로 등록하며, 최초 채권기관 코드는 최초대출이 발생한 업권에 따라 등록
- 대출(담보)종류코드 중 “999”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① 채권인수전문기관이 양수받은 채권에 대하여 대출(담보)종류코드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금융기관이 양수받은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으로부터 대출(담보)종류코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카드대출정보 <개정 2016.10.24., 2016.12.29., 2017.6.7., 2022.9.13., 2023.6.1.>

구 분	등록 대상자	등록사유	등록 코드	최초 채권기관 및 대환대출 (코드)	해제사유	해제 코드	등록시기	비 고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개인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거래사실	0037	- 신규취급(00) - 은행(11) - 카드(12) - 여전(13) - 보험(14) - 상호금융(15) - 저축은행(16) - 증권 자산운용(17) - 대부(18) - 기타(19) - 대환대출(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91)	채무가 소멸하거나 파산면책결정, 개인회생면책결정, 소멸시효 완성 또는 기타 사유로 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보전처분등으로 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0038	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거래사실	0041					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유형·업무특성 등에 따라 분류된 집단이 작성한 이와 유사한 약관 또는 약정에 따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 경우 포함)하여 해제 시 해제사유코드 “0088” 입력

- 금융기관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기관이 등록한 대출계약철회정보를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7영업일 동안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 양수받은 채권의 경우 당초의 등록코드 및 대출(담보)종류코드로 등록하며, 최초 채권기관 코드는 최초대출이 발생한 업권에 따라 등록

4) 보험계약대출정보 <신설 2019.7.17.>

구분	등록 대상자	등록 사유	등록 코드	해제 코드	대출(담보)종류		등록시기	해제사유	비고
					종류	코드			
보험계약 대출현황	개인	보험계약대출 거래사실	0031	0032	보험계약대출	400	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채무가 소멸하거나 기타 사유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	

5) 개인채무보증정보

구 분	등록 대상자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해제 코드	등록시기	비 고
개인채무 보증정보	개인 (보증인)	채무보증사실	0033	보증채무가 소멸하거나 파산면책결정, 개인회생면책결정, 소멸시효 완성 또는 기타 사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0034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보전처분등으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6) 기업신용공여정보 <개정 2022.9.13.>

등록 대상자	구 분	등록사유	등록시기	최초 채권기관 코드	서민금융 코드	담보유형코드	해제사유	비 고
기업	신용공여 현황 (10일이상 연체 포함)	신용공여 거래사실	사유발생 일로부터 4영업일 이내	- 신규취급 (00) - 은행(11) - 카드(12) - 여전(13) - 보험(14) - 상호금융 (15) - 저축은행 (16) - 증권, 자산운용 (17) - 대부(18) - 기타(19) - 온투업 (20)	- 새희망홀씨 (100) - 햇살론15 (150) - 햇살론17 (170) - 햇살론youth (180) - 햇살론뱅크 (190) - 햇살론 (200) - 바꿔드림론 (300) - 안전망대출 (350) - 안전망대출II (360)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400) - 기타 (900)	-순수신용(1) -물적담보(2) -지급보증서담보(3) -인적담보(4) -혼합담보(5)	채무가 소멸하거나 파산면책결정, 개인회생면책결정, 소멸시효 완성 또는 기타 사유로 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전처분 등으로 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 연체사유발생일부터 7년이 경과하거나 신용도판단정보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일이상 연체정보' 등록 불가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및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따른 채무조정 신청·약정 체결이 있는 경우 '10일이상 연체정보' 해제 및 등록 유예. 단, 동 신청·약정이 취소·실효 등의 사유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 다시 등록
	한도성 신용공여 현황							
	신용공여에 대한 담보현황							
	법인의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 약정	법인의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약정 사실						
	카드거래 정보	정보 등록 전월 카드거래 사실	매월 7영업일 이내				다음달 1일	집중관리항목은 2. 신용거래정보의 7) 신용카드 이용·결제금액에 관한 정보와 동일
	기업어음 거래사실	기업어음 거래 발생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정정가능)				-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만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매매금리는 제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 「기업신용공여정보 사유발생보고서」에 따름

6-1) 삭제 <2020.8.4.>

7) 신용카드 이용 · 결제금액에 관한 정보 <개정 2017.12.12., 2021.12.2.>

등록 대상자	구분	등록사유	등록시기	해제 사유	비고
개인	신용판매 이용금액	정보 등록 전월 신용판매 이용금액(매입금액을 말한다)	매월 7영업일 이내	다음달 1일	- 신용카드 업자가 등록하며 신용카드업자(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한 이용금액·잔액 및 한도 정보 포함 제공) 및 신용정보회사에만 제공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	정보 등록 전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			
	신용판매 일부결제 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잔액	정보 등록 전월 신용판매 리볼빙 이용잔액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잔액	정보 등록 전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리볼빙 이용 잔액			
	신용판매 신용공여 한도	정보 등록 전월 신용판매 신용공여한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신용공여한도	정보 등록 전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용공여한도			
	정상청구 금액 및 결제금액, 미청구(미도래)잔액	정보 등록 전월 정상청구 금액 및 결제금액, 미청구(미도래)잔액			
연체 기산일자 및 연체금액	정보 등록 전월 연체 기산일자(5영업일 경과한 경우) 및 연체금액(원금 및 이자의 합계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8) 사고회원정보

등록사유		해제사유	등록시기	비고
사고발생에 관한 회원의 정보	1. 카드 도난분실(해외도난분실 포함)에 대하여 보상을 신청한 자	최종 정보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 신용카드업자가 등록 - 신용카드업자를 제외한 금융기관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2. 배달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신청한 자			
	3. 허위발급에 대하여 보상을 신청한 자			
사고종결에 관한 보상 및 처리정보	1. 카드 도난분실(해외도난분실포함)에 대하여 보상처리가 종결된 자			
	2. 배달사고에 대하여 보상처리가 종결된 자			
	3. 허위발급에 대하여 보상처리가 종결된 자			

3. 신용도판단정보

1) 연체정보 <개정 2018.9.6., 2022.9.13., 2023.6.1.>

구 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해제코드)	보존기간	등록시기	비고
대출금 연 체	1.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0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보존 1. 등록금액 1천 만원을 초과하는 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보존 가.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된 경우 보존기간 없음 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다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 2. 등록금액 1천 만원 이하인 정보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없음. 다만, 해제사유 제19호다목에 따라 해제된 경우 1년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2. 분할상환방식의 개인주택 자금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한 자(다만, 만기 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010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채무자변제”라 한다)(01) 가. 채무자(관련인을 포함한다)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기일경과어음미결제정보, 무보증회사채상환불이행정보, 무담보미수채권정보는 제외한다) 나. 금융기관이 정한 본인부담액을 정리한 경우(관련인정보에 한한다) 다. 기일경과어음을 결제한 경우(기일경과어음미결제정보에 한한다) 라. 만기도래 지급제시 무보증 회사채를 상환한 경우(무보증회사채상환불이행정보에 한한다) 마. 무담보미수채권을 상환한 경우(무담보미수채권정보에 한한다)			
	3.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청년창업대출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자(다만, 만기 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0114	2. 보증인(관련인을 제외한다)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이하 “보증인변제”라 한다)(02) 3. 금융기관이 채권을 법적절차 등에 의해 회수한 경우(이하 “강제회수”라 한다)(03) 4. 금융기관이 채권을 감면, 면제, 포기한 경우(이하 “손실처리”라 한다)(04) 5.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이 있는 경우(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06) 6. 채무자변제 및 손실처리(07) 7. 보증인변제 및 손실처리(08) 8. 강제회수 및 손실처리(09) 9.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이 있는 경우(신용회복지원 확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10)			
	4. 학자금 대출 등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자(다만, 만기 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등록(등록사유발생일은 당초사유발생일로 한다) 1. 대학의 학적 조사결과 졸업후 24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연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2. 대학원의 학적 조사결과 입학후 24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연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3.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재직으로 인한 연체정보 해제자로서 2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연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4. 중소기업 재직으로 인한 연체정보 해제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결과 24개월이 경과하기 전 중소기업을 퇴직한 자로서 연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0115	10. 삭제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2) 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 나.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 1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13)			
	5. 농림축산식품부지원 학자 금융자사업의 대출원금 또는 교육부지원 무상학자금대여사업의 대출원금 등을 10개월 이상 연체한 자 (농림축산식품부 용자의 경우 '10년도, '11년도 대출건 및 2015.12.31. 이전 발생한 연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0116				

	<p>에 해당하는 경우 재등록(등록사유발생일은 당초사유발생일로 한다)</p> <p>1. 중소기업 재직으로 인한 연체정보 해제자로서 2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연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p> <p>2. 중소기업 재직으로 인한 연체정보 해제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결과 24개월이 경과하기 전 중소기업을 퇴직한 자로서 연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p>			<p>13. 파산면책결정이 있는 경우(파산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14)</p> <p>14. 개인의 사망 또는 법인의 청산 (15)</p> <p>15. 채권을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16)</p> <p>16.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한 경우 (17)</p> <p>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등록코드0115에 한한다)(99)</p> <p>가. 대학의 학적 조사결과 졸업후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동 사유로 해제한 기간은 아래 나목의 사유로 해제한 기간과 합산하여 48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아래 다목의 사유로 해제한 기간과 합산하여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p> <p>나. 대학원의 학적 조사결과 입학후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동 사유로 해제한 기간은 아래 다목의 사유로 해제한 기간과 합산하여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p> <p>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자료조사 결과 중소기업 재직자(위 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로 해제한 기간이 없는 자에 한하며, 동 사유로 해제한 기간은 합산하여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p> <p>18.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자료조사 결과 중소기업 재직자(동 사유로 해제한 기간은 합산하여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등록코드0116 및 0117에 한한다)(99)</p> <p>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99)</p> <p>가. 기타 채무가 소멸되거나 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보전처분등으로 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채무의 상환을 유예한 경우</p> <p>다.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p>		
	<p>6.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학자금융자사업의 대출원금 등을 6개월이상 연체한 자</p> <p>(2016.1.1. 이후 발생한 연체. 다만, '10년도, '11년도 대출 건 제외)</p>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등록(등록사유발생일은 당초사유발생일로 한다)</p> <p>1. 중소기업 재직으로 인한 연체정보 해제자로서 2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연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p> <p>2. 중소기업 재직으로 인한 연체정보 해제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결과 24개월이 경과하기 전 중소기업을 퇴직한 자로서 연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p>	0117				
	<p>6의2.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 또는 융자 결정된 학자금 대출 등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p>	0118				
	<p>7. 5만원 이상의 카드론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p>	0103				
신카대연	<p>8.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p>	0104				
할부대연	<p>9.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p>	0105			<p>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보존</p> <p>1. 등록금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보존</p> <p>가.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된 경우 보존기간 없음</p> <p>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p>	<p>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p>

				간. 다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매입환연체	10. 매입외환 부도대전 미결제액을 취급점의 부도 또는 차기 통지접수일에 3영업일을 가산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추심후지급 부도 포함)		0106	2. 등록금액 5백만원 이하인 정보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없음. 다만, 해제사유 제19호 다목에 따라 해제된 경우 1년		
외환관련연체	11. 외환관련 수수료 및 기한부 수입신용장에 의한 이자의 미결제액을 취급점의 부도 또는 차기 통지접수일에 3영업일을 가산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보유한 자		0107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보존 1. 등록금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보존 가.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된 경우 보존기간 없음 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다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해외대출금연체	12. 해외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대출원금이 5만원 이상 (특수채권 제외)으로서 해당기간 경과시 등록	0108	2.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인 정보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없음. 다만, 해제사유 제19호 다목에 따라 해제된 경우 1년		종금사은 중금계정 CP에 한함
기일경과음미결제	13. 만기일 경과 어음을 1개월 이상 미결제한 자		0109			
무보증회사채상환불이행	14. 만기도래하여 지급제시된 무보증회사채에 대하여 상환약정금의 지급을 불이행한 자		0110			
무담보미수채권	15. 무담보미수채권을 3개월 이상 보유한 자		0111	보존기간 없음. 다만, 해제사유 제19호 다목에 따라 해제된 경우 1년		증권사 한 국증권 금융에 한함
부실채권인수	1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차주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대출원금이 5만원 이상 (특수채권 제외)으로	0112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보존 1. 등록금액 1천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은 제외

					<p>만원을 초과하는 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보존</p> <p>가.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된 경우 보존기간 없음</p> <p>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다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p> <p>2.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인 정보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없음. 다만, 해제사유 제19호 다목에 따라 해제된 경우 1년</p>	
부 실 채 권 차 주	17. 정리금융공사가 인수한 부 실채권차주	서 해 당 기 간 경 과 시 등 록	0113			

2)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개정 2022.9.13., 2023.6.1.>

구 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해제코드)	보존기간	등록시기	비고
지 급 보 증 대 지 급 . 대 위 변 제	1.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자 [보증보험사의 이행성보증(신용)보험 대위변제금 포함]	02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채무자 변제”라 한다)(01) 가. 채무자(관련인을 포함한다)가 해당 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 등을 정리한 경우 나. 금융기관이 정한 본인부담액을 정리한 경우(관련인정보에 한한다) 다. 해당 소구구상불능 채무를 정리한 때(소구구상불능 정보에 한한다) 라. 해당 채무액을 완납한 때(공단신용보증대지급금 정보에 한한다) 2. 보증인(관련인을 제외한다)이 해당 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 등을 정리한 경우(이하 “보증인변제”라 한다)(02) 3. 금융기관이 채권을 법적절차 등에 의해 회수한 경우(이하 “강제회수”라 한다)(03) 4. 금융기관이 채권을 감면, 면제, 포기한 경우(이하 “손실처리”라 한다)(04) 5.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이 있는 경우(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06) 6. 채무자변제 및 손실처리(07) 7. 보증인변제 및 손실처리(08) 8. 강제회수 및 손실처리(09) 9.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이 있는 경우(신용회복지원 확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10) 10. 삭제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2) 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 나.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 1. 등록금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보존 가.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된 경우 보존기간 없음 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다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 2.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인 정보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없음. 다만, 해제사유 제18호다목에 따라 해제된 경우 1년	사유 발생 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2.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보증보험사의 금융성(신용)보증보험 대위변제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 주택금융신용보증대지급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대지급금 포함]	0202				
	3. 자체대손보전 관련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자	0203				
해 외 지 급 보 증 대 지 급	4.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자	0204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대출원금이 5만원 이상(특수채권 제외)으로서 해당 기간 경과시 등록			
소 구 구 상 불 능	5. 구상채무발생일로부터 구상불능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소구불능수출어음보험금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않은 수출업체(다만, 선적전 금융은 대위변제후 1개월로 할 수 있다)	0205				
공 단 신 용 보 증 대 지 급	7.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으로 손실을 초래케한 자(단,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보증대지급금은 제외한다)	0207		보존기간 없음. 다만, 해제사유 제18호다목에 따라 해제된 경우 1년		
	7의2. 학자금 대출로 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으로 손실을 초래케한 자	0209				
학 자 금 대 출 관 련 대 지 급	8. 학자금대출 관련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등록(등록사유발생	0208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대출원금이 5만원 이상(특수채권 제외)으로서 해당 기간 경과시 등록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 1. 등록금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보	사유 발생 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및 보증기관에 한함

	<p>일은 당초사유발생일로 한다)</p> <p>1. 대학의 학적 조사 결과 졸업후 24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연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p> <p>2. 대학원의 학적 조사 결과 입학후 24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연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p> <p>3. 중소기업 재직으로 인한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해제자로서 2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연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p> <p>4. 중소기업 재직으로 인한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해제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결과 24개월이 경과하기 전 중소기업을 퇴직한 자로서 연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p>		<p>경우(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p> <p>1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13)</p> <p>13. 파산면책결정이 있는 경우(파산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14)</p> <p>14. 개인의 사망 또는 법인의 청산(15)</p> <p>15. 채권을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16)</p> <p>16.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한 경우(17)</p> <p>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등록코드0208에 한한다)(99)</p> <p>가. 대학의 학적 조사결과 졸업후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동 사유로 해제한 기간은 아래 나목의 사유로 해제한 기간과 합산하여 48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목의 사유로 해제한 기간과 합산하여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p> <p>나. 대학원의 학적 조사결과 입학후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동 사유로 해제한 기간은 아래 다목의 사유로 해제한 기간과 합산하여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p> <p>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자료조사 결과 중소기업 재직자(위 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로 해제한 기간이 없는 자에 한하며, 동 사유로 해제한 기간은 합산하여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p> <p>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99)</p> <p>가. 기타 채무가 소멸되거나 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보전처분등으로 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채무의 상환을 유예한 경우</p> <p>다.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p>	<p>존</p> <p>가.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된 경우 보존기간 없음</p> <p>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다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p> <p>2.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인 정보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없음. 다만, 해제사유 제18호다목에 따라 해제된 경우 1년</p>		
--	---	--	---	---	--	--

3) 부도정보

구 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해제코드)	보존 기간	등록시기	비고
어 음 수 표 부 도 사 실	1. 어음수표 부도사실이 있는 자 - 어음교환업무규약 또는 전자어음업무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 대상 사유로 인한 부도 사실이 있는자를 말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부도일 익영업일로 함	0404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계 수 최 부 도	2. 가계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 대상자를 말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거래정지처분일로 함	0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이 경우 회수한 어음·수표의 사본 또는 회수인정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를 영업점장이 결재한 후 해제한다)(01) 2. 제10조에 따른 어음 또는 수표 용지의 회수인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 회수한 어음·수표의 사본 또는 회수인정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를 영업점장이 결재한 후 해제한다)(01)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당 좌 수 최 부 도	3. 당좌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 대상자를 말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거래정지처분일로 함	0402	3.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12) 4.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12)			
약 속 어 최 부 도	4. 약속어음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 어음교환업무규약 또는 전자어음업무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 대상자를 말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거래정지처분일로 함	0403	5. 파산면책결정이 있는 경우(파산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14) 6. 개인의 사망 또는 법인의 청산(15) 7.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99). 다만, 약속어음최종부도정보는 제외한다.			

4) 금융질서문란정보 <개정 2020.8.4.>

구 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해제코드)	보존 기간	등록시기	비고
식별정보대여	1.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자의 개인식별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제가목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09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등록사유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이 그 손해가 전부 배상 또는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여 해제를 요청한 경우(99) 2.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99)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유죄의 확정판결 정보를 입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위변조·허위자료제출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0961				
대출사기	3. 대출금 등을 용도 외로 유용하거나 대출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0962				
보험사기	4.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또는 제352조(제347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다른 법률에서 위 각 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그 범죄를 포함한다)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0963				
보험사기(특별법)	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0964				
신용카드도용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0965				
회생파산사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음으로써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0966				
외국환허위보고	8. 「외국환거래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0967				
신용회복사기	9. 신용회복위원회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채무를 조정 받았거나 조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의 책임재산 감소행위를 함으로써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0968				
접근	10.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0969				

매 체 양 도 양 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같은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	--	--	--	--

5) 관련인정보

구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해제코드)	보존기간	비 고
관련인	신용정보주체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어음·수표 부도사실(0404)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정보주체(이하 “피관련인”이라 한다)의 관련인	- 각 등록코드 앞에“9”표시 - 특수채권 관련인은 각 등록코드 앞 “8” 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피관련인의 해당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된 경우(피관련인의 해제코드를 따름) 2. 관련인이 금융기관이 정한 본인부담액을 정리한 경우(01) 3.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관련인이 정책금융기관의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한 것으로 결정되고 보증부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동 사실을 증명한 경우(99)	기록을 보존하지 않음, 다만, 피관련인이 7년 기간이 경과하여 해제된 경우 피관련인의 보존기간을 따름	- 과점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경우 등록여부의 판단은 해당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만하여 등록 - 등록사유가 발생한 이후 지분율이 변동되어 과점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아니게 되어도 등록유지

6) 미수발생정보 <개정 2019.7.17>

등록사유	등록시기	등록코드	해제사유	보존기간	비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결계좌(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에 따라 미수가 발생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상장증권 매수의 경우에는 위탁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상장증권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위탁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된 경우(등록사유가 발생한 날은 미수발생일로 한다)	동결계좌로 지정된 날	F1 01	- 동결계좌로 지정되어 등록된 경우	동결계좌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 증권회사에서 등록함 - 증권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결계좌로 지정된 경우(등록사유가 발생한 날은 미수발생일로 한다)				동결계좌로 지정된 날로부터 120일*	

* 다만, 증권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7) 신용거래의 무담보 미수채권정보

등록사유	등록시기	등록코드	해제사유	보존기간	비고
금융투자회사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위탁자의 신용거래용자 또는 신용거래 대주를 임의 상환정리 후에도 미수채권이 잔존하는 경우	- 미수채권 발생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을 포함하여 5일째 되는 매매거래일의 미수채권 잔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일째 되는 매매거래일	F1 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등록사유가 해소된 경우 2. 미수채권 잔액이 10만원 이하로 변동된 경우 3.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없음	- 증권회사에서 등록 - 증권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미수발생정보 및 신용거래의 무담보 미수채권정보와 함께 등록하는 식별정보는 다음과 같음

1. 개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여권번호, 국내거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 투자등록번호 등)
2.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3. 외국법인 : 외국인 투자등록번호 등

4.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구 분	대상거래처	등록사유(등록항목)		등록코드	등록시기	비 고
일 반 정 보	외부감사 실시기업	차 주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종업원수	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정보등록기 관에만 제공
		주 소	본사(자택)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우 편 번 호	우편번호			
		전 화 번 호	본사(자택) 전화번호 및 사업장 전화번호			
		업 종	업종, 산업분류코드(세분류)			
		설 립 일 자	설립일자			
		경 영 방 식	창업자(소유주), 창업2세, 동업, 전문경영인, 기타			
		기 업 규 모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재 무 정 보		재 무 상 태	결산일자, 총자산, 자본총계, 총차입금,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자본금			
		재 무 비 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영업이익률, 매출액증가율, 총자산회전율			
비재무 정 보		상 장 유 무	코스닥등록, 거래소시장, 제3시장 거래여부 등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4-2) 수출실적 이관정보 <개정 2022.2.8>

구 분	대상거래처	등록사유(항목)	등록코드	등록시기	비고
수출실적 이관정보	기업	이관대상 수출실적의 기준연월, 실적금액 등	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즉 시	이관전은행- 이관후은행 간 공유

5. 공공정보

1) 체납정보 등 <개정 2017.12.12., 2018.6.7., 2018.9.6., 2019.1.4., 2020.8.4., 2020.9.3., 2022.6.2.>

구분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해제코드	비 고
국세 체납	1. 국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등록사유가 해소된 경우 2.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2.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2			
	3. 국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3			
지방세 체납	4.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2016년 1월 1일부터 결손처분하였으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4			
	5.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2016년 1월 1일부터 결손처분하였으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5			
	6.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6			
과태료 체납	7.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등록사유가 해소된 경우 2.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신택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신택등기·등록의 원인이 된 계약의 관련 정보(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하는 관리번호)를 “계좌번호”란에 추가집중

	8. 과태료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12		
	9. 과태료 체납 결손 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13		
관세 체납	10. 관세등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701		
	11. 1년에 3회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702		
	12. 관세등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703		
채무 불이행 자	1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경우	0801		
고용· 산재 보험료 ·임금 체납 불	14.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8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등록사유가 해소된 경우 2.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15.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803		
	16.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결손 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804		
	17. 3년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	0807		
	17의2. 건보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0808		

건강 보험료 채납	17의3.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채납액 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809		
연금 보험료 채납	17의4.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채납액 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810		
신용 회복 지원	18.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 는 자(「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명령이 있 는 때를 등록사유발생일 로 본다)	10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2. 회생조건 이행이 완료된 경우(법원의 보고의무 면제 를 포함한다) 3.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77 - 금융기관이 등록
	19.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 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 된 자	1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확정된 신용회복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 2. 확정된 신용회복채무를 2년 이상 변제한 경우 3. 신용회복지원내용이 효력을 상실하여 연체정보등 또는 금융질서문란정보로 등록될 경우 4.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 회가 등록 - 1601이 등록된 경우 금융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함
	20.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자 (파산면책결정일을 등록 사유발생일로 본다)	12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면책채권을 변제한 경우 1의2.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 2.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법원에서 통보 하여 등록 - 1601이 등록 된 경우 금융기 관에 제공하지 아니함
	21.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 확인가결정을 받은 자(변 제계확인가결정일을 등 록사유발생일로 본다)	13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1의2.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2.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법원에서 통보 하여 등록 - 1601이 등록된 경우 금융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함
	2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결정 전 재산에 대한 보 전처분, 중지·금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자(위 처분 등이 채 권자에게 송달된 날을 등 록사유발생일로 본다) 나. 보전처분, 중지·금지 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 령 없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자(개시 결정일을 등록사유발생 일로 본다)	1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등록사유 중 가목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에 신청자가 개시신청 을 취하한 경우 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다.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변경·취소 등으로 인해 해당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 우 라.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제2호 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등록사유 중 나목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가.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 인가여부가 결정된 경우 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 다. 변제계확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 3.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77 - 금융기관이 등 록(해당 결정에 대한 사건번호 와 그 사건번호 를 부여한 법원 의 정보를 함께 등록하며, 처분 의 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번호 및 법원 정보 변 경 시 해당 정보 정정) - 1601이 등록 된 경우 금융기 관에 제공하지 아니함

<p>2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규정에 의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자나. 2년이상 채무 변제로 채무조정사실 해제 후 3개월 이상 채무상환을 불이행한 자</p>	1501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확정된 신용회복 채무의 변제를 완료한 경우 2. 확정된 신용회복 채무를 2년이상 변제한 경우 3.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p>		<p>-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등록 - 1601이 등록된 경우 금융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함</p>
<p>23.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재창업지원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자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받은 자 - 자금지원을 받은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한다</p>	1601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재창업자금 지원·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및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의 약정 위반 등에 따른 실효</p>	77	<p>-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등록</p>
		<p>2. 재창업자금 지원·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및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의 목적 달성으로 종료</p>	01	<p>- 정보등록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만 제공</p>
<p>24.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자 및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자 - 채무조정 약정 취소(실효)시 재등록(등록사유발생일은 당초사유발생일로 한다)</p>	1701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채무의 변제를 완료한 경우 2.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경우 3. 등록코드 1101, 1201, 1301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양도한 경우(국민행복기금이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5.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p>	77	<p>-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등록</p>
<p>25.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 및 동채무조정 약정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자</p>	1702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채무조정 약정이 취소(실효)된 경우 2.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경우 3.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2년간 변제한 경우 4. 등록코드 1101, 1201, 1301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양도한 경우(국민행복기금이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6.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p>	77	<p>-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등록</p>
<p>25의2.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따라 새출발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p>	1801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채무조정 약정이 취소(실효)된 경우 2.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경우 3.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2년간 변제한 경우 4.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p>	77	<p>- 새출발기금이 등록 - 1601이 등록된 경우 금융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함</p>

	25의3.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	1802			- 신용회복위원회가 등록 - 1601이 등록된 경우 금융기관에 제공하지 않음
국외이주신고	26.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 - 해외이주비 환전용 해외이주신고확인서에 의거 해외이주비를 환전(또는 송금)하는 날	14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국외이주포기신고서에 의해 국외이주를 포기한 경우 2.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 금융기관이 등록(동의서를 징구 받은 고객에 대해서만 한함)

2) 조달청의 정부 납품실적 및 납품액 정보

구분	등록대상자	등록사유(등록항목)	등록코드	등록시기	비고
조달업체 정보	정부납품 실적이 있는 기업	기업체명	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1:시설, 2:용역, 3:내자 1:총액계약, 2:단가계약 3:제3자단가계약 4:단가납품요구 5:제3자 납품요구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수요기관 정보		수요기관명			
		법인등록번호			
계약 정보		업무구분			
		계약구분			
		계약번호			
		계약차수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시작일자			
		계약종료일자			
		계약해지여부			
		계약해지일			
	채권가압류금액				
지급 정보	지분율				
	납품금액				
	대금구분				
	지체상금				
	선금청산액				
	유보금				
감가액					
지급금액					
					1:선금, 2:대금, 3:기성, 4:준공, 5:유보

3) 사망자정보 등 <개정 2017.12.12., 2022.9.13.>

구분	대상자	등록항목	등록시기	비고
사망자 정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개인 중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에 의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자	사망여부 등	해당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주민등록번호 변경정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개인 중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이 확인된 자	변경여부 등		

4) 국세청 모범납세자 정보

구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비 고
모범 납세자 정보	국세청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2001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국세청에서 관련 기준에 따라 해제한 경우	국세청에서 등록

5)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신설 2020.8.4., 개정 2022.9.13.>

구분	등록 대상자	등록사유	등록코드	사회적기업 유형 코드	해제사유 (해제코드)	등록시기	비고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등 유형)	법인	1.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인증·인가·인정·지정·등록 등 사유발생시	S1 01	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여신 상환 등 상거래 종료(21) 2. 정보 오등록으로 인한 해제(22) 3.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인가·인정·지정·등록 등 취소(23)	해당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금융기관이 등록
		2. 사회적금융상품 등 취급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기업신용공여정보
사유발생보고서

<작성요령>

1. 차주구분 : 개인사업자(2), 법인(3), 해외현지법인(5)
2.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해외현지법인의 경우 모기업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3.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앞에 '999'를 기재한다.(해외현지법인의 경우 금융기관이 임의로 생성한 번호를 기재한다)
4. 상호명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개인명의로인 경우 주민등록증) 상의 상호명이 상이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증) 기준으로 기재한다.
5.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세분류 업종코드를 기입한다.
6. 등록구분 : 등록(01), 해제(02), 정정(03), 소급등록(04), 소급해제(05), 삭제(77),청약철회(88)
7. 정보구분 : 신용공여현황(QD), 한도성거래(QH), 담보기록(QS),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QG), 카드거래정보(QC)
8. 과목(담보)코드 : 코드표 참조
9. 금액항목 : 천원 단위로 백원단위에서 반올림, 1천원 이하는 '1'등록
 - 9-1. 신용공여잔액 : 원금없이 이자만 남은 경우는 '1'등록하며 제비용(이자 및 제비용이 함께 남은 경우 포함)이 남은 경우는 '2'로 정정
 - 9-2. 회전한도액 : 회전한도액은 대출(보증)잔액 보다 크거나 같음
 - 9-3. 대출(보증)잔액 : 원금없이 이자만 남은 경우는 '1'등록하며 제비용(이자 및 제비용이 함께 남은 경우 포함)이 남은 경우는 '2'로 정정
 - 9-4. 유효(가용)가액 : 담보물건의 감정가액에서 선순위담보, 실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담보권실행이 가능한 유효(가용)가액을 기입
 - 9-5. 보증금액 : 협약서와 보증서가 동일금액으로 이중 보증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집중
10. 10일이상 연체
 - 10-1. 연체사유발생일자 : '10일이상 연체정보'의 최초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짜
 - 10-2. 연체사유구분 : 코드표 참조
 - 10-3. 원금연체금액 : 천원단위로 백원단위에서 반올림. 1천원 이하는 '1'등록
 - 10-4. 이자연체금액 : 천원단위로 백원단위에서 반올림. 1천원 이하는 '1'등록(정상이자에 대한 연체금액만 집중, 연체이자 및 제비용은 제외)
11. 비고 : 상환능력심사 지원정보 산출에 필요한 정보(상환방식코드, 금리, 만기일자, 거치개월, 거치기간종료일, 만기지정상환금액 등)를 기재

<코드표>

* 은행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특수금융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비은행 : 은행 및 특수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

1) 계정과목코드

대과목	은행 및 특수금융			대과목	비은행		
	계정과목코드		과목명		계정과목코드	과목명	
대출 채권	원화 대출금	101	상업어음 할인(CMA 포함)	대출 채권	101	상업어음 할인(CMA 포함)	
		103	당좌대출		102	무역어음 할인(CMA 포함)	
		일반 자금	105		운전자금대출	104	유가증권담보대출
			107		시설자금대출	106	부동산담보대출
		109	무역금융		108	예적금담보대출	
		111	신탁계정 대출		110	계약금액내대출	
		113	기업어음 할인(CMA 포함)		112	어음담보대출	
		115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113	기업어음 할인(CMA 포함)	
		117	구매자금대출		114	지급보증(담보)대출	
		129	기타 원화대출금		116	공제금대출	
	131	외화대출금	118		농수산정책자금		
	133	내국수입유산스	119		종금원화대출		
	135	역외외화대출금	120		신용대출(종합통장대출)		
	137	외화차관차금대출금	121		신기술금융대출		

대과목	은행 및 특수금융		대과목	비은행	
	계정과목코드	과목명		계정과목코드	과목명
대출 채권	139	지급보증대지급금	대출 채권	122	수출금융
	141	매입어음(원화환어음매입)		123	보험계약대출
	143	매입외환		131	외화대출금
	144	매입외환(신용위험)		132	금융리스채권
	145	팩토링채권(외상매출채권)		133	내국수입유산스
	146	기업구매전용카드		135	역외외화대출금
	149	환매조건부채권매수(신탁포함)		136	운용리스채권
	151	콜론(신탁포함)		138	자금대여
	153	사모사채(신탁포함)		139	지급보증대지급금
	155	신탁계정금전채권		140	약정투자
	189	기타		142	할부금융
		145	팩토링채권(외상매출채권)		
		149	환매조건부채권매수(신탁포함)		
		151	콜론(신탁포함)		
		153	사모사채(신탁포함)		
		189	기타		

대과목	은행 및 특수금융			대과목	비은행		
	계정과목코드		과목명		계정과목코드	과목명	
유가 증권	201		은행계정CP(보증어음포함)	유가 증권	202	기업어음매입	
	매입 어음 (신탁 포함)	211	보증어음		231	공모사채	
		213	자유금리기업어음			233	대여유가증권
		215	중개어음				289
		229	기타				
	231		공모사채				
	233		대여유가증권				
	289		기타				
주식	확정 (원화) 지급 보증	301	융자담보지보	주식	302	지급보증	
		303	사채지급보증		304	어음지급보증	
		329	기 타			305	담보배서어음대출
	확정 (외화) 지급 보증	331	인수		306		무역인수어음
		333	화물선취보증			307	이행지보
		349	기타		389		기타
		348	현지지급보증				
	미확정 지급 보증	351	신용장개설관계				
		369	기타				
	373		배서어음				
	375		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신탁포함)				
	389		기타				

대과목	은행 및 특수금융		대과목	비은행	
	계정과목코드	과목명		계정과목코드	과목명
기타	401	여신성가지급금(신탁, 종금 포함)	기타	401	여신성가지급금(신탁, 종금 포함)
	403	미수금		405	자산유동화에 따른 신용보강수단
	405	자산유동화에 따른 신용보강수단		407	대손상각채권
	407	대손상각채권		409	신용카드채권(직불, 신탁 포함)
	409	신용카드채권(직불, 신탁 포함)		489	기 타
	489	기 타			
종금 계정	대출 채권 (CMA 계정 포함)	501	할인어음		
		503	팩토링어음		
		529	기 타		
	리스 채권	531	금융리스채권		
		533	운용리스채권		
		549	기 타		
	주석	551	어음지급보증		
		553	무역어음인수		
		555	담보배서어음매출		
		569	기 타		
신탁	995	원본 또는 이익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신탁	995	원본 또는 이익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2) 과목(담보)코드

한도성 신용공여현황	
과목코드	코드명
7111	상업어음할인
7121	당좌대출
7131	일반자금대출
7141	기업어음할인
7151	무역금융
7161	무역어음할인
7171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7181	구매자금대출
7191	보증기관 지급보증
8111	외화대출
5001	기타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과목코드	코드명
1111	법인채무보증(일반)
1121	법인채무보증(PF)
1131	법인채무보증(SOC PF)
2111	법인채무인수약정(일반)
2121	법인채무인수약정(PF)
2131	법인채무인수약정(SOC PF)
5001	기타

신용공여에 대한 담보현황	
담보코드	코드명
1131	주택
1141	상가(각종시설 등)
1151	오피스텔
1161	토지
1171	농지
1191	기타 부동산
1211	선박, 항공기
1221	자동차, 중기
1231	광업권, 어업권
1241	공장 및 광업재단
1251	지식재산권
1291	기타 특수저당
1311	기계기구
1321	농축수산물
1331	재고자산
1391	기타동산
1401	유가증권
1511	예금적금
1521	확정채권
1591	기타 채권
1901	기타 재산권
2111	정부보증
2121	금융기관 지급보증
2131	보증기금 지급보증
5001	기 타

3) 연체사유코드

코드	코드명	비고
2101	대출원금, 이자 등을 10일 이상 연체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신용공여잔액 5만원 이상(특수채권 제외)
2104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10일 이상 연체	
2105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10일 이상 연체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신용공여잔액 5만원 이상(특수채권 제외)
2106	매입외환 부도대전 미결제액을 취급점의 부도 또는 차기 통지접수일에 3영업일을 가산한 날로부터 10일 이상 보유(추심후지급 부도 포함)	
2107	외화관련 수수료 및 기한부 수입신용장에 의한 이자의 미결제액을 취급점의 부도 또는 차기 통지 접수일에 3영업일을 가산한 날로부터 10일 이상 보유	
2108	해외대출금을 10일이상 연체	
2109	만기일 경과 어음을 10일 이상 미결제	
2110	만기도래하여 지급제시된 무보증회사채에 대하여 상환약정금의 지급을 불이행	
2111	무담보미수채권을 10일 이상 보유	
211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차주	
2113	정리금융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차주	
2114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청년창업대출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10일 이상 연체	
2199	기타 신용공여의 10일이상 연체	

코드	코드명	비고
2201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10일이상 보유 (보증보험사의 이행정보증(신용)보험 대위변제금 포함)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신용공 여잔액 5만원 이상(특수채권 제외)
2202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 (보증보험사의 금융성(신용)보증보험 대위변제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 주택금융신용보증대지급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대지급금 포함)	
2203	자체대손보전 관련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발생	
2204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을 10일 이상 보유	
2205	구상채무발생일로부터구상불능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소구불능 수출어음 보험금을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환하지 않은 수출업체	
2207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으로 손실을 초래 (단,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보증대지급금은 제외)	

기업어음(CP) 거래상황표

수 신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부장
발 신 : (인)

년월일	기관 코드	계정코드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발행사명

(단위 : 백만원)

거래 구분	종류	발행 금액	발행일	매매일	만기일	매매 금리	매입(매출)처 (상대거래처)	평가 등급	평가 기관
합계									

< 작성요령 >

1. 년월일 : 2008년 6월 30일인 경우 20080630로 표기
2. 기관코드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부여한 기관별 코드(4자리) 예) 111기관은 0111로 표기
3.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계정코드 : ①고유 ②신탁 ③종금으로 구분
5. 발행사의 산업분류, 그룹구분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처리
6. 거래구분
 - ① 직접매입 : 할인 또는 제1배서인의 매입 ② 유통물매입 : 직접매입분을 제외한 매입분
 - ③ 매출 ④ 중도상환
7. 종류 : ① 일반 기업어음(CP) ②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8. 매매금리 : 소수점 3자리
9. 매입(매출)처 : ① 금융회사(1.은행 2.투신 3.종금 4.증권 5.보험 6.기타)
(상대거래처) ② 연기금
 ③ 법인(1.국내법인 2.외국계)
 ④ 기타
10. 평가등급 및 평가기관 : 신용정보회사의 평가등급중 낮은등급으로 집중
11. 집중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